

##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9. 12. 16

제안자 : 송은섭 의원의

### □ 수정 이유

- 개정되는 조례안 중 조문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.

### 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조 중 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”을  
“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”으로 한다.
- 안 제2조제1호 중 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”을  
“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”으로 한다.
- 안 제2조제2호 중 “60세”를 “55세”로 한다.
- 안 제2조제4호 중 “제3조제5호나목”을 “제3조제5호”로 한다.
- 안 제8조제2항 중 “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”를  
“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 
지원할 수 있다.”로 수정 한다.

##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조 중 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”을  
“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”으로 한다.
- 안 제2조제1호 중 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”을  
“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”으로 한다.
- 안 제2조제2호 중 “60세”를 “55세”로 한다.
- 안 제2조제4호 중 “제3조제5호나목”을 “제3조제5호”로 한다.
- 안 제8조제2항 중 “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”를  
“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 
지원할 수 있다.”로 수정 한다.



제 정 안	수 정 안
<p>4. “농촌지역”이란 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.(단 특별시·광역시 지역은 제외)</p> <p>제8조(교육훈련 지원) ① (생 략) ② 도지사는 귀농인이 영농을 체험하기 위한 귀농인 농업인턴 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4. ----- 제3조제5호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8조(교육훈련 지원) ①(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